

민법일반 3

실효의 원칙

- - 제162조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한다. 소유권은 행사하지 않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.
- 구체적 타당성을 위하여 소유권에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

소멸시효의 정의

- 일정한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를 묻지 않고서,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, 이로써 권리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가 시효이다.

제척기간

-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이다.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권리의 경우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.

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구분

- 민법 제146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,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의 원칙이 필요한가?

- 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, 상대방이 이제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된 경우에,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행사는 허용되지 않으며, 상대방은 그 권리행사에 대하여 '실효의 항변'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.

실효의 원칙의 필요성

- 1. 현행민법의 시효기간은 너무 장기임 2. 형성권 항변권과 같이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경우 2. 조속한 권리관계의 안정이 요구되는 분야

-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(근로자의 지위)의 존부를 둘러싼 노동분쟁은, 당시의 경제적 정세에 대처하여 최선의 설비와 조직으로 기업활동을 전개하여야 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물론, 임금 수입에 의하여 자신과 **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의 입장에서**도 신속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실효의 원칙이 다른 법률관계에 있어서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.

-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(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)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,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,

- 징계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에 있어서는 징계 사유와 그 징계해임처분의 무효 사유 및 징계해임된 근로자가 그 처분이 무효인 것을 알게 된 경위는 물론, 그 근로자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할 것으로 사용자가 신뢰할 만한 다른 사정(예를 들면,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해고수당 등을 수령하고 오랫동안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았든지 해고된 후 곧 다른 직장을 얻어 근무하였다는 등의 사정),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를 대신 채용하는 등 새로운 인사체제를 구축하여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모두 참작하여 그 근로자가 새삼스럽게 징계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지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.

- 원고가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이 무효인 것임을 알고서도 2년 4개월 남짓한 동안이나 그 처분이 무효인 것이라고 주장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바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, 원고가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으로 면직된 때로부터 12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새삼스럽게 그 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피고와의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과 같은 소를 제기하는 것은,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요청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.
- (출처 : 대법원 1992.1.21. 선고 91다30118 판결【사원확인】 [공1992.3.15.(916),882])

- 이러한 실효의 원칙은 소유권이나 친권과 같은 배타적 항구적 권리에 관하여 그 권리의 본질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될 수 있으나, 실제로 적용된 예는 없음

- *** (94다12234) 乙이 잔존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에도 甲은 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즉각 해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乙에 대하여 위 잔존채무의 이행을 계속 최고하여 왔으며, 乙이 잔존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해제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무려 1년 4개월 가량이나 경과한 후 비로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기에 이르렀다.

- 甲이 해제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위 잔존채무의 이행을 최고함에 따라 을은 위 해제권은 더이상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하였다 할 것이고, 또 위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자체는 거의 전부가 지급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乙이 그와 같이 신뢰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, 그 후 甲이 새삼스럽게 위 해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, 따라서 이제 와서 甲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다시 이행제공을 하면서 최고를 할 필요가 있다.
- (출처 : 대법원 1994.11.25. 선고 94다12234 판결【소유권이전등기】 [공1995.1.1.(983),84])